투자위험등급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BNK든든한적격TDF204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BNK든든한적격TDF204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BNK든든한적격TDF204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BNK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11월 0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11월 1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1-6910-1100 / 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 및 협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해외재간접 구조-피투자펀드 및 해외운용사 현황 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년 11월 08일

BNK든든한적격TDF204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 DO120]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BNK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다양한 국내 · 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및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BNK든든한적격TDF204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 · 외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노후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투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을 **2045년**으로 설정하고,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활용합니다.
  - 한국인 투자자의 생애주기 Data를 반영하여 BNK와 Dimensional이 맞춤형 Glide Path 개발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여 운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치(NAV)의 80% 이상 수준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합니다.**
- 비교지수 : 없음(비교지수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위험이 감소되거나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비교지수를 책정한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0% 이내	**0.96** 0.55	0.900	0.9657	231	366	505	800	1,6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26** 0.85	1.190	1.2659	163	332	506	873	1,903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0% 이내	**0.66** 0.25	0.580	0.6674	151	256	365	596	1,26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82** 0.41	0.730	0.8275	118	241	368	638	1,408

(주1)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펀드 보수)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평균)의 최근 보수인 연 0.326%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년 1개월이 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11.09 ~ 26.11.08	24.11.09 ~ 26.11.08	23.11.09 ~ 26.11.08	21.11.09 ~ 26.11.08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	2021-11-15	8.39	6.82	11.05	-	2.84
수익률 변동성(%)	2021-11-15	9.30	9.87	9.83	-	11.77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재간접형)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윤영국	1970	책임 (상무대우)	7개	1,836억	6.89	6.24	6.29	6.24	6년 9개월
권기훈	1997	부책임 (파트너)	5개	536억	6.89	-	6.29	6.24	1년 11개월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윤영국 - 0개, 0억 / 권기훈 – 0개, 0억]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 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 Portfolio Manager

펀드매니저	Emily Cornell
학력 및 운용 경력	- 2013 ~ 現 Dimensional Fund Advisors, Senior Portfolio Manager and Vice President - 2008 ~ 2011 Calamos Investments, Production Reporting Coordinator - 2007 ~ 2008 Cimarron Partners, Associate - MBA, University of Chicago Booth School of Business - University of Chicago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해외재간접 구조-피투자펀드 및 해외운용사 현황 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글로벌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역외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당 국가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환헤지 비율을 조정하여 최대한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관련 시장 규모, 거래비용, 투자수단의 유용성, 시장간의 시차, 관련 시장의 교란 및 전세계 거시 경제적인 기타 변수 등에 따라 환위험을 회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설정 해지의 반복, 가격변동, 최소 환헤지 거래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하여 100% 헤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신탁 순자산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환헤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순자산액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부분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유동성 및 설정·해지와 관련된 위험(유동성 위험, 환매연기 위험, 투자신탁 해지 위험 등을 포함)도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은 이 투자신탁과는 별도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으로 운용되므로, 개별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의 변경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은 해외에 설정되어 운용되는 펀드로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펀드 운용, 세무 등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투자신탁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고 일부 투자국가 채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도 유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시장의 증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 송환불능 위험	일부 국가는 펀드의 배당소득, 매매차익의 본국 송환 또는 증권의 매매 절차와 관련하여 그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의 이러한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위탁운용사 변경에 따른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탁계약 변경을 통해 해외위탁운용사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위탁 운용사의 운용방법 및 운용전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율조정형 자산배분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해외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각각 투자하는 비율이 자산별로 최소 5%에서 최대 80%까지 조절하여 투자할 수 있는 비율조정 형 자산배분펀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으로 인해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어, 펀드 전체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지거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일반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변동성 및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의 거래량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전문인력의 교체, 내부 정책에 따른 정보의 비접근성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관련 의사결정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청산이 결정될 경우 투자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6영업일(D+5)**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7영업일(D+6)**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영업일(D+9)**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환매수수료	없음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구 산출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 BNK자산운용㈜ (대표번호 : 02-6910-11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nkasset.co.kr)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 Dimensional Fund Advisors Pte. Ltd 업무위탁범위 : 운용업무 / 운용지시업무 /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6년 11월 18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년 1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 보

		미징구(C)	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년 1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펀드 및 기관 투자자(F)**	펀드 및 기관투자자*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투자자* 구분 기준>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 나.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고액(I)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Wrap전용(W)	Wrap Account용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프옵션) 전용으로 설정 · 설립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퇴직연금 사전 지정운용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 · 설립된 경우에 가입가능합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붙임] 용어풀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BNK든든한적격TDF204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DO120)						
(클래스) 종류	Class A	Class A-e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I	Class C-W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O474	DO475	DO476	DO477	DO478	DO479	DO480
(클래스) 종류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A-G	Class C-G	Class 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O481	DO482	DO483	DO485	DO486	DO487	DO488
(클래스) 종류	Class S-P	Class S-P2	Class C-O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O489	DO490	DX54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붙임] 용어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좌(=1원) 단위로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경남은행, 부산은행 외)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방법 및 절차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BNK든든한적격TDF204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DO120)						
(클래스) 종류	Class A	Class A-e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I	Class C-W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O474	DO475	DO476	DO477	DO478	DO479	DO480
(클래스) 종류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A-G	Class C-G	Class 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O481	DO482	DO483	DO485	DO486	DO487	DO488
(클래스) 종류	Class S-P	Class S-P2	Class C-O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O489	DO490	DX54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1.11.08	최초설정
2022.09.06	사전지정제도(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클래스 추가, 투자전략 보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 보수 인하 등
2023.01.19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반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2023.08.14	채권평가회사 추가
2024.01.31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
2024.08.0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24.11.29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위험 등급 변경(2등급▷3등급),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직판 클래스 삭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2025.11.25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026.04.0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BNK든든한TDF204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BNK든든한적격TDF204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6.11.18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BNK 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21층 (대표전화 : 02-6910-11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위 탁 운 용 사	Dimensional Fund Advisors Pte. Ltd.
업 무 위 탁 범 위	운용업무 / 운용지시업무 /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설 립 연 도	2012 년 05 월 02 일
회 사 주 소 및 연 락 처	8 Marina View, Asia Square Tower 1, Suite 33-01, Singapore 018960. 전화번호 : +65-6340-1300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6.11.08 기준)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재간접형)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윤영국	1970	책임 (상무대우)	7개	1,836억	6.89	6.24	6.29	6.24	6년 9개월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1995.12~1999.10 유화증권 파생상품운용 - 1999.10~2005.06 CJ 투자증권 상품개발 - 2005.06~2006.09 서울자산운용 상품개발 - 2006.09~2009.05 피닉스자산운용 상품개발 - 2009.05~2017.01 유진자산운용 상품개발/마케팅 - 2017.03~2018.04 국제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 - 2018.04~ 현재 BNK 자산운용 솔루션본부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0개, 0억]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 전문인력입니다.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③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재간접형)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권기훈	1997	부책임 (파트너)	5개	536억	6.89	-	6.29	6.24	1년 11개월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2024.07~ 현재 BNK 자산운용 솔루션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0개, 0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솔루션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④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운용역	운용기간
이다은(파트너)	2023.01.19 ~ 2024.08.02
권기훈(파트너)	2024.11.29 ~ 현재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 Portfolio Manager

펀드매니저	Emily Cornell
학력 및 운용 경력	- 2013~現 Dimensional Fund Advisors, Senior Portfolio Manager and Vice President - 2008~2011 Calamos Investments, Production Reporting Coordinator - 2007~2008 Cimarron Partners, Associate - MBA, University of Chicago Booth School of Business - University of Chicago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래스 (Class)	한글 표기	가입자격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A-e	수수료선취-온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펀드 및 기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	납입금액 30억원 이상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법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
S-P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C-O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

주1) 각 종류별로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간접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아일랜드에서 설정된 Dimensional Fund Advisors 가 운용하고 있는 역외펀드(UCIT Fund)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 외 집합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노후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를 설정하고, 자산배분모델 등을 활용하여 국내 · 외 주식 및 채권 관련 자산에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합니다. 초기 시점에는 주식관련 자산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특정 목표 시점에 갈수록 국내 · 외 주식 관련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여 채권 관련 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①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투자 필요성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주식관련 자산과 채권관련 자산의 배분을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자의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목표시점(Target Date)에 맞추어 자산배분전략인 Glide Path에 따라 Dimensional Fund Advisors가 운용하고 있는 역외펀드(UCIT Fund)에 분산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인 Dimensional Fund Advisors는 1981년 설립된 미국의 종합운용사 중 한 곳으로 텍사스 주 오스틴에 본사를 두고 13개국 오피스를 통하여 글로벌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효율적 시장 가설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설계 및 Passive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②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BNK자산운용은 이메일, 컨퍼런스콜,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메일과 컨퍼런스콜 등을 통하여 펀드 기본정보 및 자료를 전달/확인받았으며, 화상회의를 통해 투자 프로세스, 운용성과, 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증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펀드의 주요 기간별 성과분석 및 운용팀 코멘터리, 펀드 및 운용사의 투자 종목 선정방식 및 자체 리서치 프로세스에 대한 방법론적 이해, 타 경쟁펀드와의 경쟁력 및 특이점 확인, 피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Target Date Fund에 대한 운용역의 전망 등을 검증하였습니다.

③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선정 프로세스

모닝스타, 블룸버그 등 펀드 데이터를 활용한 펀드 선정

A. 초기 스크리닝 : 글로벌 우수 운용사 펀드 추출 - 운용사의 안정성, 운용철학, 평판 등을 고려하여 적격운용사 선정 - 모닝스타 평가를 기반으로 운용사의 스타일을 파악하여 유사한 펀드 그룹화
B. 정량분석 :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 정량평가 실시 - 절대수익률 / 변동성 - 위험조정 수익률 - 하락위험 - 자금흐름
C. 정성분석 : 운용사 실사 및 매니저 인터뷰를 포함한 엄격한 정성분석 - Target Date Fund 운용팀 및 미국, 아시아에 위치한 Researcher 인터뷰를 통해 자산배분 전략에 따른 성과 지속가능성, 투자 목적에 맞는 하위 펀드 이해, 조직 구성 등을 검토 - 운용사 안정성, 이해관계 일치 여부 평가 - 위험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분석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1)	투자대상 내역
①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5-23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의 비중을 투자목표시점 이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상으로 하고, 2045년 1월 1일(투자목표시점) 이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의 투자한도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고,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하로 한다. -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의 투자한도는 주식의 경우 투자신탁 주식투자액의 80% 이내, 채권의 경우 투자신탁 채권투자액의 80% 이내로 한다.
②	주식	40% 이하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③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자증권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④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⑤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 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표시 된 것.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어음"이라한다.)
⑥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⑦	장외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⑧	환매조건부매도	50% 이하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⑨	증권의 대여 주2)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⑩	증권의 차입 주3)	20% 이하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⑪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345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주1)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 위의 ①~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4호 및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①~⑪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 주식관련사채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주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1.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

주3)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내용
①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수익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

	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③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⑧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⑨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가. 투자대상 ⑥~⑩, 위의 나. 투자제한 ②~⑦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위의 가. 투자대상 ⑥~⑦, 나. 투자제한 ②의 본문, ③의 가목 및 나목, ⑤ 내지 ⑦ 및 집합투자규약 제2조제4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의 나. 투자제한 ③의 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 · 투자방침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투자할 것
  2.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할 것
  3. 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출 것
- 위의 나. 투자제한 ③의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위의 나. 투자제한 ③의 다목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할 수 있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위의 "가. 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투자 필요성, 실사(Due Diligence), 선정 프로세스 등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설립국가,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투자비중, 회계감사 실시 여부, 홈페이지 주소 등 정보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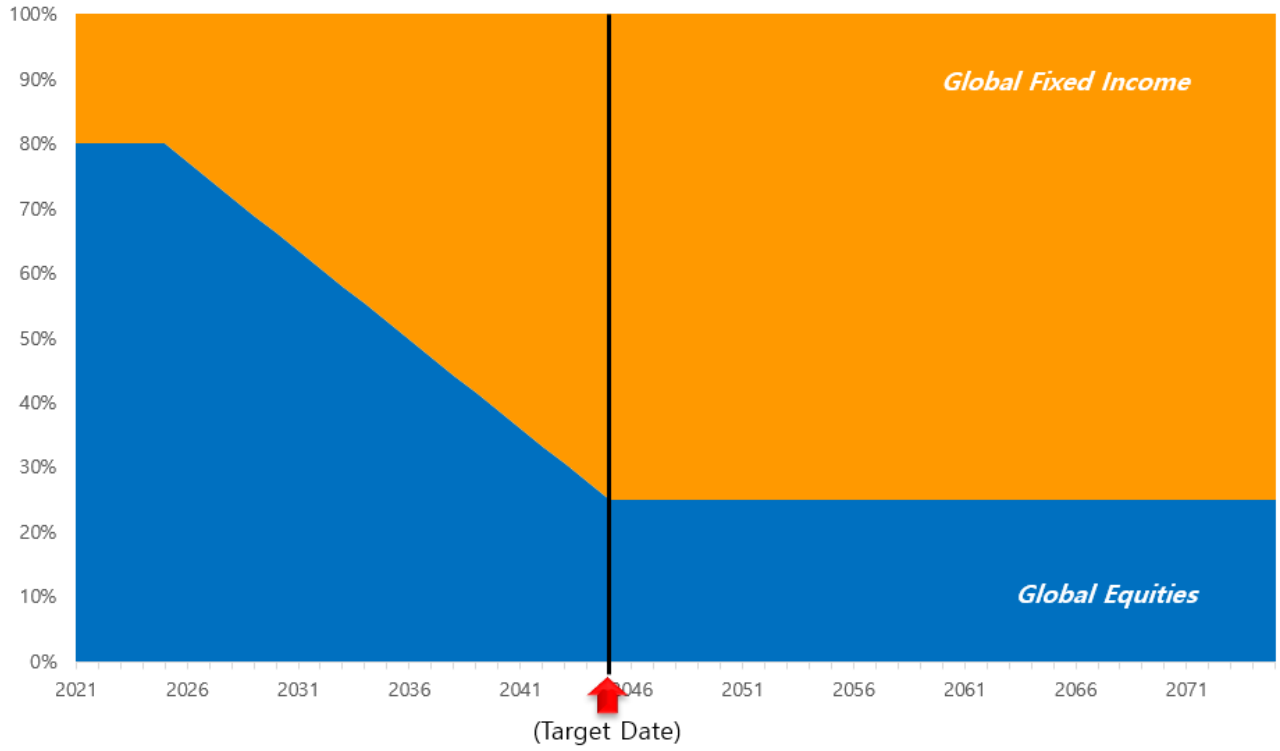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전략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 외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노후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투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을 **2045년**으로 설정하고,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활용합니다.
  - ✓ 설정 초기 시점에는 주식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 **2045년**)에 근접할수록 채권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2 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에 부합합니다.



[5년 단위별 자산배분 목표 비중]

구분	BNK든든한적격TDF2045	
자산비중 / 목표시점	위험자산	안전자산
2021(설정시점)	78.00%	22.00%
2025	78.00%	22.00%
2030	64.75%	35.25%

2035	51.50%	48.50%
2040	38.25%	61.75%
2045	25.00%	75.00%
2050	25.00%	75.00%
2055	25.00%	75.00%
2060	25.00%	75.00%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합니다.

※ 상기 자산배분 비중(BNK Glide Path)은 최초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이며, 향후 국내 · 외 시장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Dimensional Fund Advisor Pte. Ltd. 이며, 외화자산의 운용 · 운용지시업무, 운용 · 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등을 위탁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운용 중에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른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내용은 정정 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펀드명	**World Equity Fund (ISIN Code : IE00B3V7VL84)**		
최초설정일	2018.08.03	집합투자업자	Dimensional Funds Plc
등록국	Ireland	펀드규모	$8.0bn
설립국가	Ireland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Central bank of Ireland
투자비중(안)	13.8%	회계감사 실시	여
투자전략	이 펀드는 선진국 및 이머징 국가의 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단, 이머징 국가의 비중을 20% 이하로 투자하여 변동성을 낮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주된 투자대상 (비중 및 한도)	- 전 세계 주식 중 13,000여개 이상의 종목에 분산투자하여 비체계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vs. MSCI All country index 종목 수: 2,413) - 장기적인 리서치를 바탕으로 소형주, 가치주, 높은 수익성의 주식 비중을 확대합니다. 소형주는 시가총액 $50mn 이상의 종목을 편입합니다. - 펀드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무기 제조업체는 투자 유니버스에서 제외합니다. - 유동주 비중, 모멘텀, 유동성, 수익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개별종목 투자비중을 결정합니다.		

펀드명	**Global Core Equity Fund (ISIN Code : IE00B2PC0153)**		
최초설정일	2008.09.03	집합투자업자	Dimensional Funds Plc
등록국	Ireland	펀드규모	$10.7bn
설립국가	Ireland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Central bank of Ireland

투자비중(안)	13.7%	회계감사 실시	여
투자전략	이 펀드는 미주, 유럽 등 선진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이머징 국가의 주식 투자 비중을 20% 이하로 유지합니다.		
주된 투자대상 (비중 및 한도)	- 낮은 비용으로 다수의 종목에 투자하여 분산투자 효과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Dimensional Fund Advisors의 다른 펀드 대비 개별 주식 비중을 높게 유지하여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 소형주, 가치주, 수익성이 높은 주식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여 시장 대비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합니다. - 유동주 비중, 모멘텀, 유동성, 수익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투자 유니버스를 결정합니다. - 이 펀드는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펀드명	**Global Core Equity Lower Carbon ESG Screened Fund (ISIN Code : IE00B8DMPF88)**		
최초설정일	2013.06.26	집합투자업자	Dimensional Funds Plc
등록국	Ireland	펀드규모	$6.8bn
설립국가	Ireland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Central bank of Ireland
투자비중(안)	13.7%	회계감사 실시	여
투자전략	이 펀드는 선진국의 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사회적 책임을 위해 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유니버스를 구성합니다.		
주된 투자대상 (비중 및 한도)	- 포트폴리오 구성 시 온실가스 배출이 많거나, 온실가스 비축량이 많은 기업은 배제하거나 비중을 축소합니다. - 지속가능성을 위해 섹터 구성 시 온실가스배출 강도의 점수를 85% 배분하고, 수질관리, 독극물 유출 등에 EGS 점수 15%를 배정합니다. - 소형주, 가치주, 수익성이 높은 주식의 투자 비중을 높게 유지합니다. - 이 펀드는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통화관련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펀드명	**Emerging Markets Large Cap Core Equity Fund (ISIN Code : IE00BYVJQT42)**		
최초설정일	2016.03.17	집합투자업자	Dimensional Funds Plc
등록국	Ireland	펀드규모	$1.7bn
설립국가	Ireland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Central bank of Ireland
투자비중(안)	4.4%	회계감사 실시	여
투자전략	이 펀드는 이머징 국가의 상장 주식(보통주, 우선주) 및 이를 기초로 한 예탁 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된 투자대상 (비중 및 한도)	- 이머징 국가 시장 내 시가총액 상위 85% 종목에 투자합니다. - 이머징 국가의 비중을 적어도 50% 유지합니다. 이머징 국가에 상장 및 거래되는 주식, 이머징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증권, 이머징 국가의 화폐로 거래되는 증권 등에서 투자 기회를 찾습니다. - Core equity fund는 분산투자보다 소형주, 가치주, 고수익회사의 비중을 더 높게 유지하여		

	장기적으로 시장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합니다. Fund 내 종목 수는 MSCI Emerging Markets Index 내 종목 수 1,165개 대비 적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 이 펀드는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통화관련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펀드명	**Global Small Companies Fund (ISIN Code : IE00B3MRDK01)**		
최초설정일	2011.03.31	집합투자업자	Dimensional Funds Plc
등록국	Ireland	펀드규모	$1.4bn
설립국가	Ireland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Central bank of Ireland
투자비중(안)	9.6%	회계감사 실시	여
투자전략	이 펀드는 선진국의 상장 주식 중 소형주 비중을 확대하여 주로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머징 국가의 비중은 20% 이하로 유지합니다.		
주된 투자대상 (비중 및 한도)	- 시가총액 $50mn 이상의 기업에 투자하며, 각 국가 내 시가총액 순위 하위 12.5%의 소형주 및 마이크로캡 주식의 비중을 시장 대비 높게 유지하여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 소형주 중 저수익성, 높은 valuation, 높은 자산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의 투자 비중을 적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 펀드 내 종목 수는 5,500여개로 편입하여 MSCI World small cap index 편입 종목 3,857개 대비 분산투자효과를 누릴 계획입니다. - 유동주 비중, 모멘텀, 유동성, 수익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개별종목 투자비중을 결정합니다.		

펀드명	**Global Targeted Value Fund (ISIN Code : IE00B2PC0609)**		
최초설정일	2008.02.06	집합투자업자	Dimensional Funds Plc
등록국	Ireland	펀드규모	$8.2bn
설립국가	Ireland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Central bank of Ireland
투자비중(안)	9.5%	회계감사 실시	여
투자전략	이 펀드는 선진국의 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머징 국가의 비중은 20% 이하로 유지합니다.		
주된 투자대상 (비중 및 한도)	- 운용전략은 1) 시가총액 $50mn 이상 각 시장 별 시가총액 순위 하위 20%의 소형주 비중을 높게 유지하며, 2) Price-to-book value 기준 하위 50% 기업의 가치주 비중을 높게 편입하여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REITs, 규제가 많은 유틸리티 산업, 논란이 되는 무기 산업은 유니버스에서 제외합니다. - 다양한 산업에 분산 투자하며, 개별 섹터의 비중은 시장 대비 최대 10% overweight할 계획입니다. - 이 펀드는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펀드명	**Emerging Markets Targeted Value Fund (ISIN Code : IE00B1W6DN61)**

최초설정일	2007.04.23	집합투자업자	Dimensional Funds Plc
등록국	Ireland	펀드규모	$860.2mn
설립국가	Ireland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Central bank of Ireland
투자비중(안)	3.1%	회계감사 실시	여
투자전략	이 펀드는 이머징 국가의 상장 소형주 및 이를 기초로 한 예탁 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된 투자대상 (비중 및 한도)	- 운용전략은 1) 시가총액 $50mn이상 각 국가 내 시가총액 하위 30% 기업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2) price-to-book 기준 하위 50% 기업의 가치주 편입 비중을 높게 유지하여 장기적으로 시장 대비 고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 중소형주 중 저수익성 및 높은 valuation의 주식을 배제하고, 소형주 중 자산성장률이 높은 기업을 유니버스에서 제외합니다. - REITs, 규제가 많은 유틸리티 산업, 논란이 되는 무기산업에 투자를 배제합니다. - 다양한 산업에 분산투자하며, style neutral, size eligible universe 대비 개별 섹터 비중을 최대 10% overweight합니다.		

펀드명	**Global Short Fixed Income Fund (ISIN Code : IE0030982627)**		
최초설정일	2008.11.28	집합투자업자	Dimensional Funds Plc
등록국	Ireland	펀드규모	$5.2bn
설립국가	Ireland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Central bank of Ireland
투자비중(안)	1.5%	회계감사 실시	여
투자전략	이 펀드는 채권, 상업어음, 은행채 및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투자 가치의 보존과 이자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주된 투자대상 (비중 및 한도)	- 운용전략은 1) 채권 등급 AAA~A 등급의 채권에 투자하며, 2) 평균 듀레이션 최대 5년, 3) 최대 만기 5년에 투자합니다. - 개별 산업 투자 비중은 최대 25%이며, 18개 국가의 12개 환율을 허용하여 미국 달러 헤지로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합니다. - 개별 산업 비중 최대 3%, EU 국가는 30% 이하, 미국 및 일본 국채는 최대 10%로 투자 비중을 제한합니다. - 비교 지수는 FTSE World Government Bond Index 1-5 years(hedged to USD)를 사용합니다. - 이 펀드는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펀드명	**Global Short-Term Investment Grade Fixed Income Fund (ISIN Code : IE00BFG1R007)**		
최초설정일	2014.01.08	집합투자업자	Dimensional Funds Plc
등록국	Ireland	펀드규모	$3.2bn
설립국가	Ireland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Central bank of Ireland

투자비중(안)	1.5%	회계감사 실시	여
투자전략	이 펀드는 채권, 상업어음, 은행채 및 회사채 등과 같은 투자등급채권에 투자합니다.		
주된 투자대상 (비중 및 한도)	- 1) 투자등급 채권은 AAA~BBB, 2) 평균 듀레이션 3년, 3) 최대 만기 5년, 4) 산업별 비중 최대 25%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여 유니버스를 구성합니다. - 21개 국가의 12개 환율을 허용하며 미국 달러로 헤지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합니다. - 개별 발행 기준 AAA+AA 최대 3%, A 1%, BBB 0.75%, 정부 30%로 투자 비중을 제한합니다. - 신용등급 강등 시 펀드의 최대 이익을 고려하여 편출합니다. - 이 펀드는 Global Aggregate Credit Bond Index 1-5Years(hedged to USD)를 벤치마크로 사용하여 운영합니다.		

펀드명	**Global Core Fixed Income Fund (ISIN Code : IE00BG85LS38)**		
최초설정일	2018.12.11	집합투자업자	Dimensional Funds Plc
등록국	Ireland	펀드규모	$2.7bn
설립국가	Ireland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Central bank of Ireland
투자비중(안)	10.8%	회계감사 실시	여
투자전략	이 펀드는 국채, 기관,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이익의 보존과 장기적인 자본획득을 추구합니다.		
주된 투자대상 (비중 및 한도)	- 투자 등급은 국채, 회사채 AAA~B로 제한합니다. - 평균 듀레이션은 벤치마크 대비 최소 -1.0년~+0.5년으로 유지하고, 만기는 최대 15년으로 제한합니다. - 21개 국가 12개 환율을 허용하며,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해 환헤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 시 1) 개별 산업 투자 비중 최대 25%, 2) 발행사 비중 AAA&AA 최대 3%, A 1%, BBB 0.75%, BB 0.5%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 하이일드 채권 비중은 최대 5%, 최소 2%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 레버리지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벤치마크 지수는 Global Aggregate Bond Index(hedeged to USD)입니다.		

펀드명	**Global Core Fixed Income Lower Carbon ESG Screened Fund (ISIN Code : IE00BKPWG913)**		
최초설정일	2020.09.03	집합투자업자	Dimensional Funds Plc
등록국	Ireland	펀드규모	$1.0bn
설립국가	Ireland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Central bank of Ireland
투자비중(안)	10.8%	회계감사 실시	여
투자전략	이 펀드는 국채, 기관, 회사채 등에 투자하며,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주된	- 이 펀드는 회사채의 경우 벤치마크 대비 온실가스배출 intensity exposure와 온실가스배출		

투자대상 (비중 및 한도)	reservese를 낮게 유지합니다. - 투자 등급은 국채, 회사채 AAA~BBB로 제한합니다. - 평균 듀레이션은 벤치마크 대비 최소 -1.0년~+0.5년으로 유지합니다. - 21개 국가 12개 환율을 허용하며,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해 환헤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 시 1) 개별 산업 투자 비중 최대 25%, 2) 발행사 비중 AAA&AA 최대 3%, A 1%, BBB 0.75%, 3)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비중을 제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레버리지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벤치마크 지수는 Global Aggregate Bond Index(hedeged to USD)입니다.

-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전략, 운용사 및 이외의 관련 정보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eu.dimensional.com/ie-en)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2026. 09. 30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 미국

인구 : 349,035,494명 (2026년 11월 기준) / 면적 : 9,833,517㎢

경제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경제성장률(%)	5.8	1.9	2.5	2.8	2.1
명목 GDP(십억$)	23,594	25,744	27,361	28,441	30,762
1인당 명목 GDP($)	70,152	76,328	76,194	84,590	89,991
물가상승률(%)	4.7	8.1	3.7	2.3	2.6
실업률(%)	5.4	3.8	4.4	4.1	4.3

▶ 캐나다

인구 : 40,467,728명 (2026년 11월 기준) / 면적 : 9,984,670㎢

경제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경제성장률(%)	4.6	3.5	1.1	1.5	1.7
명목 GDP(십억$)	2,532	2,856	2,964	3,109	3,240
1인당 명목 GDP($)	58,124	59,103	58,335	57,518	57,290
물가상승률(%)	3.4	6.8	3.9	2.4	2.1
실업률(%)	7.5	5.3	5.4	2.4	6.9

▶ 영국

인구 : 69,931,528명 (2026년 11월 기준) / 면적 : 241,930㎢

경제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경제성장률(%)	8.7	4.3	0.1	1.1	1.2
명목 GDP(십억$)	3,140	3,100	3,340	3,640	4,012
1인당 명목 GDP($)	46,344	49,327	49,099	52,423	56,661

물가상승률(%)	2.6	9.1	7.3	2.5	3.4
실업률(%)	4.6	3.9	4.0	4.3	4.9

▶ 중국

인구 : 1,412,914,089명 (2026년 11월 기준) / 면적 : 9,634,057㎢

경제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경제성장률(%)	8.6	3.1	5.4	5.0	5.0
명목 GDP(십억$)	18,184	18,338	18,367	18,945	19,626
1인당 명목 GDP($)	12,872	12,989	13,029	13,453	13,968
물가상승률(%)	0.9	2.0	0.2	0.2	0.0
실업률(%)	5.1	5.6	5.2	5.1	5.2

▶ 일본

인구 : 122,427,731명 (2026년 11월 기준) / 면적 : 377,975㎢

경제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경제성장률(%)	3.6	1.2	0.9	0.1	1.2
명목 GDP(십억$)	5,227	4,445	4,389	4,208	4,453
1인당 명목 GDP($)	41,652	35,542	35,261	33,963	36,119
물가상승률(%)	-0.2	2.5	3.3	2.7	3.2
실업률(%)	2.8	2.6	2.6	2.5	2.5

▶ 프랑스

인구 : 66,746,401명 (2026년 11월 기준) / 면적 : 675,417㎢

경제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경제성장률(%)	6.9	2.5	1.1	1.1	0.9
명목 GDP(십억$)	2,957	2,780	3,056	3,162	3,368
1인당 명목 GDP($)	44,852	42,330	44,749	46,053	48,929
물가상승률(%)	2.1	5.9	5.6	2.3	0.9
실업률(%)	7.8	7.3	7.4	7.3	7.9

▶ 호주

인구 : 27,227,096명 (2026년 11월 기준) / 면적 : 7,692,024㎢

경제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경제성장률(%)	4.7	3.7	1.9	1.0	2.0
명목 GDP(십억$)	1,633	1,651	1,742	1,795	1,833
1인당 명목 GDP($)	58,370	63,833	63,487	67,214	68,246
물가상승률(%)	3.4	6.6	5.6	3.2	2.8
실업률(%)	5.1	3.7	3.7	4.0	4.2

▶ 독일

인구 : 83,644,258명 (2026년 11월 기준) / 면적 : 357,683㎢

경제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경제성장률(%)	4.0	1.9	-1.0	0.0	0.2
명목 GDP(십억$)	4,395	4,227	4,602	4,747	5,116
1인당 명목 GDP($)	64,509	69,951	71,182	72,809	74,901
물가상승률(%)	3.2	8.7	6.0	2.5	2.3
실업률(%)	3.6	3.1	3.1	3.4	3.8

▶ 인도

인구 : 1,476,625,576명 (2026년 11월 기준) / 면적 : 3,287,263㎢

경제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경제성장률(%)	9.7	7.6	9.2	6.5	7.6
명목 GDP(십억$)	3,167	3,346	3,638	3,909	4,125
1인당 명목 GDP($)	2,250	2,361	2,547	2,711	2,818
물가상승률(%)	6.3	6.2	5.4	4.7	3.3
실업률(%)	8.0	10.5	7.1	7.9	6.5

주1) 출처: 인구 자료원- Worldometer / 조사항목 자료원- Kotra, World Bank / 면적 자료원- 미 인구조사국, 캐나다 통계청, 영국 The World Bank, 중국 국가통계국, 일본 국토교통성, 프랑스 관광청, 호주 지질과학부, 독일 연방통계청, 인도 정부 포탈

주2) 투자대상국가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에 나열된 국가 외의 다른 국가에도 투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시된 전략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피투자펀드의 위험관리전략

- 집합투자업자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정기적인 운용보고서를 입수합니다. 운용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간별 성과, 주요 보유 종목 내역, 섹터별 비중 및 국가별 비중, 위험지표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보고서 외 추가적인 운용 정보에 대해서 당사는 요청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인 Dimensional Fund Advisors의 고유의 리스크 관리 원칙 수립을 통하여 정량적 관리 및 각종 위원회 등 내부 조직을 활용하여 전 프로세스에 걸쳐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험을 관리합니다.

환헤지 전략 및 환위험 관리

- 이 투자신탁은 해외통화로 거래되는 국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서 해당 자산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원/달러 기준으로 헤지를 수행합니다.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세부 내용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기준통화가 미달러화(USD) 등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므로 외화자산 중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미달러화(USD) 등의 통화에 대해서 미달러(USD)로 투자된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80% 이상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달러화(USD) 등의 통화 대비 이종통화에 대해서는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통화 자산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이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상황에 따른 환헤지 전략의 실행여부 및 환헤지 실행비율 등에 따라 환율변동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환헤지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화로 해외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하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환헤지의 비용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장상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어 환헤지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계약환율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비용을 별도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환헤지가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외화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되며,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손실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이 펀드 수익율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이 해당 펀드의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 해외운용사에 관한 위험 및 관리방안

해외운용사의 거래 내역을 매일 점검하고, 거래관계에 있어 발생할 지 모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는 다음과 같이 해외 위탁운용사와의 계약 관련 위험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투자지침 및 기타 투자제한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항시 모니터링하고, 펀드의 순자산가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한된 투자비중을 초과할 경우 이를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통보할 것입니다. - 해외운용사와 합의된 기타 투자제한 등 심각한 계약 위반을 하였을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일정 기간 동안 제3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거나 또는 당사가 직접 운용을 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을 인수 인계할 것입니다.

- 피투자펀드에 관한 위험 및 관리방안

- 예상치 못한 대량환매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펀드자산으로 편입되어 있는 UCITS 펀드들을 환매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편입대상 UCITS 펀드 중 주식형 펀드는 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및 이머징 국가에 상장되어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현금화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또한, 이머징 국가의 투자비중은 각 펀드별로 20% 이하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 주로 국채 및 신용등급이 우량한 은행채 및 회사채 등에 투자하며 각 펀드별 다수의 종목으로 분산투자되어 있습니다.) 만약, UCITS 펀드의 환매가 원활하지 못하여 환매 및 상환 연기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신속한 회수를 위해 노력합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일부 투자 국가 채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장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유동성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비교지수: 없음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 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자산배분전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발견하거나 또는 비교지수 산출기관이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위험이 감소되거나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비교지수를 책정한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BNK자산운용의 홈페이지(www.bnkasset.co.kr)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 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아래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 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 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글로벌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역외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당 국가의 경제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위험	①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유동성 및 설정·해지와 관련된 위험 (유동성 위험, 환매연기 위험, 투자신탁 해지 위험 등을 포함)도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②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은 이 투자신탁과는 별도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으로 운용되므로 개별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변경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은 해외에 설정되어 운용되는 펀드로서 해당국가의 관련 법령 (펀드 운용, 세무 등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투자신탁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환헤지 비율을 조정하여 최대한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관련 시장 규모, 거래비용, 투자수단의 유용성, 시장간의 시차 관련 시장의 교란 및 전세계 거시경제적인 기타 변수 등에 따라 환위험을 회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설정 해지의 반복, 가격변동, 최소 환헤지 거래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하여 100% 헤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투자신탁 순자산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환헤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순자산액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부분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헤지에 따른 위험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 대비 낮아지면(환율상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를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환헤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환율하락) 원화환산시 투자자산의 손실만큼 환헤지 부분이 보전해주게 되어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 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시장의 증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비율조정형 자산배분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해외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각각 투자하는 비율이 자산별로 최소 5%에서 최대 80%까지 조절하여 투자할 수 있는 비율조정형 자산배분펀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으로 인해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어 펀드 전체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지거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일반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변동성 및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고 일부 투자국가 채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도 유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해외위탁운용사 변경에 따른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탁계약 변경을 통해 해외위탁운용사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위탁운용사의 운용방법 및 운용전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 송환불능위험	일부 국가는 펀드의 배당소득, 매매차익의 본국 송환 또는 증권의 매매 절차와 관련하여 그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의 이러한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옵션에 투자할 경우,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 회사가 상환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신용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에서 추구하는 투자목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의 거래량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전문인력의 교체, 내부 정책에 따른 정보의 비접근성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관련 의사결정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 집

관련 위험	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청산이 결정될 경우 투자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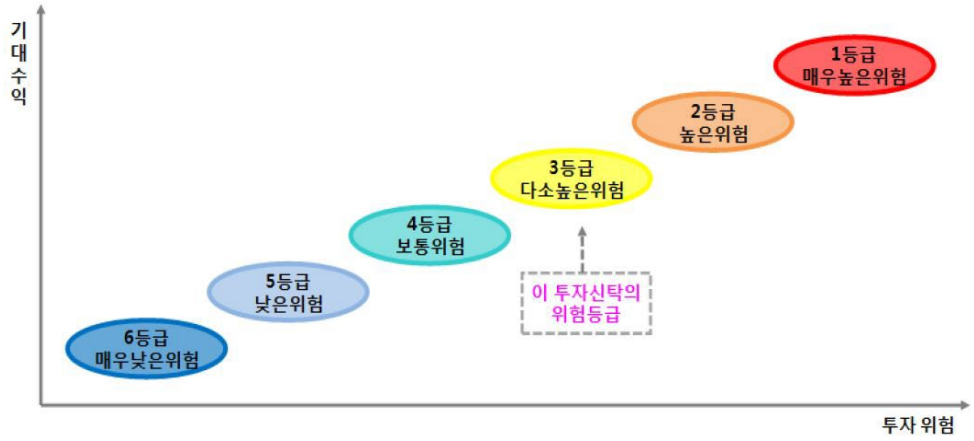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운용구조 투자성과, 투자신탁보수, 거래비용 등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도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해당 국가의 시장 개장 및 폐장 시간 등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 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의 '나. 환매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제안서 작성일 현재 입수한 범위 내에서 기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본 펀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신탁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재간접형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21.2563%**이며, 6단계 투자위험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결산일: 2026.11.07)*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 채권, 원자재 및 대체투자 관련 자산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 기준(97.5% Var 모형 사용) - 설정 후 3년 경과 시]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250)를 곱해 산출
* 수익률 변동성 기준 :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024.11.29	2등급	3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 위험등급 적용(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 수익률 변동성 : 25.8062%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Class)	한글 표기	가입자격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A-e	수수료선취-온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펀드 및 기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 제 9 조제 5 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	최초 납입금액 30 억원 이상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법제 8 조제 7 항에 의한 신탁업자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
S-P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

		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C-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 또는 판매회사 인터넷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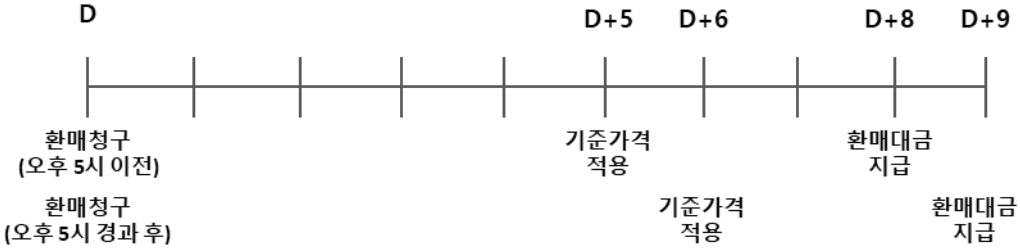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6영업일(D+5)**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7영업일(D+6)**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0영업일(D+9)**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8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법 시행령 제256조)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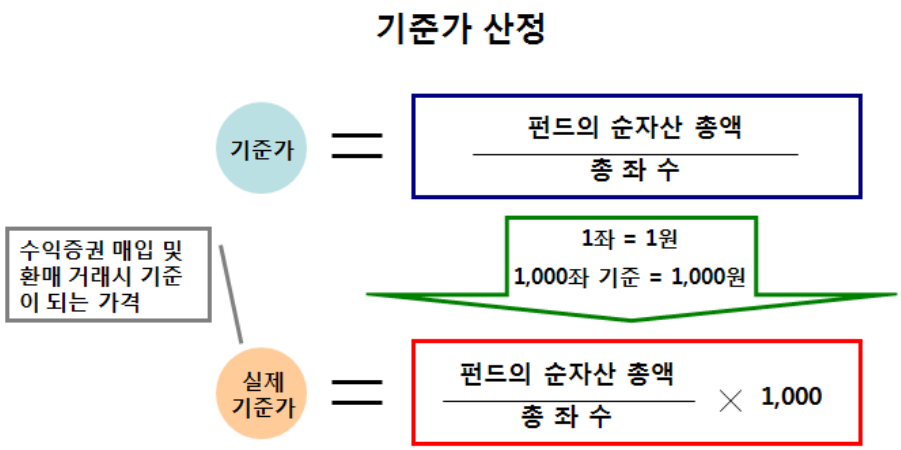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공고 · 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그 공고 · 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bnk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산정방법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NAV)는 1주(Share)당 순자산가치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집합투자기구의 발행된 총주식수로 나누어 달러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

④장외파생상품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며,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발행/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에 의하여 평가
⑤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⑥비상장채권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⑦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⑨해외주식	평가기준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⑩외화표시 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으로 평가
⑪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은 그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2)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임원
  : 위원 -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평가담당팀장, 운용담당팀장, 리스크관리담당팀장, 컴플라이언스담당팀장
- 위원회 업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주식 등 시장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의 설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등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lass)	한글 표기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납입시	환매시	환매시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납입금액의 1.00% 이내	-	**없음**

A-e	수수료선취-온라인	납입금액의 0.50% 이내	-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펀드 및 기관	-	-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	-	-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	-	-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	-	-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	-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	-	-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납입금액의 0.50% 이내	-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	-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	-	-	
S-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퇴직연금	-	-	
C-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	-	

주1) 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차등 적용의 관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판매회사는 Class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규약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주3) 이 투자신탁의 종류(Class)별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및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초설정일 ~ 2029.12.31]

구분 (Class)	한글 표기	지급비율 (연간, 순자산총액의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총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 총 보수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집	증권거래비용

										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지급시기	-	매 3개월				-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550			**0.960**	0.0057	0.9657	0.900	**1.2917**	0.0005
A-e	수수료선취-온라인		0.250			**0.660**	0.0074	0.6674	0.580	**0.9934**	0.0005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850			**1.260**	0.0059	1.2659	1.190	**1.5919**	0.0004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410			**0.820**	0.0075	0.8275	0.730	**1.1535**	0.0005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펀드 및 기관		0.020			**0.430**	0.0078	0.4378		**0.7638**	0.0005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0.040			**0.450**	0.0061	0.4561		**0.7821**	0.0005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0.000			**0.410**	0.0061	0.4161		**0.7421**	0.0005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0.600			**1.010**	0.0061	1.0161		**1.3421**	0.0005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0.280			**0.690**	-0.0007	0.6893		**1.0153**	0.0000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0.35	0.550	0.04	0.02	**0.960**	0.0076	0.9676		**1.2936**	0.0005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0.250			**0.660**	0.0078	0.6678		**0.9938**	0.0005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330			**0.740**	0.0061	0.7461		**1.0721**	0.0005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490			**0.900**	0.0061	0.9061		**1.2321**	0.0005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0.240			**0.650**	0.0061	0.6561		**0.9821**	0.0005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0.190			**0.600**	0.0061	0.6061		**0.9321**	0.0005
S-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0.180			**0.590**	0.0061	0.5961		**0.9221**	0.0005

C-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0.105			**0.515**	0.0061	0.5211		**0.8471**	0.0005

[2030.01.01 ~ 2034.12.31]

구분 (Class)	한글 표기	지급비율 (연간, 순자산총액의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총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거래비용
지급시기	-	매 3개월				-	사유발생시	-	-	-	사유발생시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30	0.450	0.04	0.02	**0.810**	-	0.810	0.900	**1.136**	-
A-e	수수료선취-온라인		0.200			**0.560**	-	0.560	0.580	**0.886**	-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760			**1.120**	-	1.120	1.190	**1.446**	-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360			**0.720**	-	0.720	0.730	**1.046**	-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펀드 및 기관		0.020			**0.380**	-	0.380	-	**0.706**	-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0.040			**0.400**	-	0.400	-	**0.726**	-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0.000			**0.360**	-	0.360	-	**0.686**	-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0.490			**0.850**	-	0.850	-	**1.176**	-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0.220			**0.580**	-	0.580	-	**0.906**	-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0.450			**0.810**	-	0.810	-	**1.136**	-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0.200			**0.560**	-	0.560	-	**0.886**	-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270			**0.630**	-	0.630	-	**0.956**	-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440			**0.800**	-	0.800	-	**1.126**	-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0.190			**0.550**	-	0.550	-	**0.876**	-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0.150			**0.510**	-	0.510	-	**0.836**	-
S-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0.140			**0.500**	-	0.500	-	**0.826**	-
C-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0.085			**0.445**	-	0.445	-	**0.771**	-

[2035.01.01 ~ 2039.12.31]

구분 (Class)	한글 표기	지급비율 (연간, 순자산총액의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총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거래비용
지급시기	-	매 3개월				-	사유발생시	-	-	-	사유발생시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25	0.350	0.04	0.02	**0.660**	-	0.660	0.900	**0.986**	-
A-e	수수료선취-온라인		0.150			**0.460**	-	0.460	0.580	**0.786**	-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660			**0.970**	-	0.970	1.190	**1.296**	-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310			**0.620**	-	0.620	0.730	**0.946**	-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및 기관		0.020			**0.330**	-	0.330	-	**0.656**	-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0.040			**0.350**	-	0.350	-	**0.676**	-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0.000			**0.310**	-	0.310	-	**0.636**	-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0.400			**0.710**	-	0.710	-	**1.036**	-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0.200			**0.510**	-	0.510	-	**0.836**	-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0.350			**0.660**	-	0.660	-	**0.986**	-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0.175			**0.485**	-	0.485	-	**0.811**	-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230			**0.540**	-	0.540	-	**0.866**	-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390			**0.700**	-	0.700	-	**1.026**	-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0.140			**0.450**	-	0.450	-	**0.776**	-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0.110			**0.420**	-	0.420	-	**0.746**	-
S-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0.100			**0.410**	-	0.410	-	**0.736**	-
C-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0.065			**0.375**	-	0.375	-	**0.701**	-

[2040.01.01 ~ 투자신탁해지일]

구분 (Class)	한글 표기	지급비율 (연간, 순자산총액의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총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거래비용
지급시기	-	매 3개월				-	사유발생시	-	-	-	사유발생

											시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20	0.200	0.04	0.02	**0.460**	-	0.460	0.900	**0.786**	-
A-e	수수료선취-온라인		0.080			**0.340**	-	0.340	0.580	**0.666**	-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510			**0.770**	-	0.770	1.190	**1.096**	-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240			**0.500**	-	0.500	0.730	**0.826**	-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펀드 및 기관		0.020			**0.280**	-	0.280	-	**0.606**	-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0.040			**0.300**	-	0.300	-	**0.626**	-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0.000			**0.260**	-	0.260	-	**0.586**	-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0.350			**0.610**	-	0.610	-	**0.936**	-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0.175			**0.435**	-	0.435	-	**0.761**	-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0.300			**0.560**	-	0.560	-	**0.886**	-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0.150			**0.410**	-	0.410	-	**0.736**	-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160			**0.420**	-	0.420	-	**0.746**	-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320			**0.580**	-	0.580	-	**0.906**	-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0.075			**0.335**	-	0.335	-	**0.661**	-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0.060			**0.320**	-	0.320	-	**0.646**	-
S-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0.050			**0.310**	-	0.310	-	**0.636**	-
C-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045			**0.305**	-	0.305	-	**0.631**	-

	퇴직연금 사전 지정운용										

* 직전 회계연도 : 2025.11.08 - 2026.11.07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주5) Class C-I, C-W, C-P, A-G, C-G, S, S-P, S-P2, C-O는 미설정된 클래스이므로 발생할 수 있는 기타비용 등은 운용중인 동 펀드의 타 클래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운용 시 실제 발생하는 기타비용 등은 상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6) '합성 총보수•비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 비율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을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비중으로 가중 평균하여 약 [**0.326**]%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2026년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순 추정치로 실제발생 비용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부동산감정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등

※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파생상품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945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66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종류(클래스)			1 년 후	2 년후	3 년 후	5 년 후	10 년 후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98	299	404	627	1,26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31	366	505	800	1,636
A-e	수수료선취-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8	189	262	420	87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1	256	365	596	1,260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30	264	404	699	1,53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63	332	506	873	1,903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5	173	265	461	1,02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8	241	368	638	1,408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45	92	141	246	55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78	160	245	426	949

	펀드 및 기관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47	96	147	256	57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0	164	251	436	971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43	87	134	234	52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6	155	238	414	923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4	212	325	564	1,24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38	280	428	740	1,623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1	144	221	385	86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4	212	325	563	1,247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9	202	310	537	1,19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33	270	413	714	1,568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8	140	214	373	83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2	208	318	552	1,222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6	205	287	462	97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9	272	390	639	1,351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3	190	290	504	1,11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6	257	393	680	1,498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3	154	211	367	82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6	222	314	545	1,208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2	127	195	339	75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6	195	298	518	1,149
S-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1	125	191	334	74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5	193	295	512	1,138
C-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3	109	168	292	65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7	177	271	472	1,049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펀드 보수)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피투자집합투자기구 평균)의 최근 보수인 연 0.326%를 예상 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Class A와 Class C의 종류별로 총 보수 ·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시점이나, Class유형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Class A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1.00%, Class A-e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0.50%, Class A-G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0.50%를 반영하였습니다.

주4) Class S의 경우 1년과 2년 후는 그 시점에 환매청구한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 0.15%를 반영하였고, 3년 후부터는 3년이 지난 시점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 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집합투자규약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 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별도의 환급절차가 없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lass C-P, C-Pe, S-P 가입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Class C-P2, C-P2e, S-P2, C-O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과세체계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5기(2025.11.08 - 2026.11.0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4기(2024.11.08 - 2025.11.0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3기(2023.11.08 - 2024.11.0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운용펀드 기준

재무상태표			
항 목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2026.11.07)	(2025.11.07)	(2024.11.07)
운용자산	12,784,796,636	11,531,118,212	10,878,557,017
증권	12,352,120,916	11,736,697,484	10,517,219,584
파생상품	-123,224,100	-328,926,273	-207,065,62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555,899,820	123,347,001	568,403,053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84,806	58,387	228,125
자산총계	12,784,981,442	11,531,176,599	10,878,785,14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3,967,662	36,984,636	7,238,496
부채총계	33,967,662	36,984,636	7,238,496
원본	10,378,829,015	10,266,919,803	10,406,539,869
수익조정금	69,085,394	-42,669,948	-28,463,146
이익잉여금	2,303,099,371	1,269,942,108	493,469,923
자본총계	12,751,013,780	11,494,191,963	10,871,546,646

손익계산서			
항 목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2025.11.08 - 2026.11.07)	(2024.11.08 - 2025.11.07)	(2023.11.08 - 2024.11.07)
운용수익	1,100,540,911	780,131,334	1,889,513,377
이자수익	10,731,587	10,779,407	12,771,265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089,809,324	769,351,927	1,876,742,112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762,359	689,446	648,422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762,359	689,446	648,422
당기순이익	1,099,778,552	779,441,888	1,888,864,955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5.11.08 - 2026.11.07)			전기(2024.11.08 - 2025.11.07)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기타(REPO,대차,콜 등)	51,100	0.0662	0.0001	53,200	0.0668	0.0001
합계	51,100	0.0662	0.0001	53,200	0.0668	0.0001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	0	0	0	0	32.68

주1) 동종유형이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하며, 해당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자료로 작성하셨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5기(2026.11.07)		제4기(2025.11.07)		제3기(2024.11.07)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555,899,820		123,347,001		568,403,053
1. 현금및현금성자산	555,899,820		123,347,001		568,403,053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300,000,000		200,000,000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00,000,000		200,000,000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2,052,120,916		11,536,697,484		10,517,219,584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2,047,310,877		11,536,523,416		10,517,099,678	
4. 기타유가증권	4,810,039		174,068		119,906	
파생상품		-123,224,100		-328,926,273		-207,065,620
1. 파생상품	-123,224,100		-328,926,273		-207,065,620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84,806		58,387		228,125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184,806		58,387		228,125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2,784,981,442		11,531,176,599		10,878,785,142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33,967,662		36,984,636		7,238,496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33,884,438		36,909,900		7,170,464	
4. 수수료미지급금	83,224		74,736		68,032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33,967,662		36,984,636		7,238,496
자 본						
1. 원 본	10,378,829,015		10,266,919,803		10,406,539,869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2,372,184,765		1,227,272,160		465,006,777	
(발행좌수 당기: 10,378,829,015 좌	이익잉여금	2,303,099,371		1,269,942,108		493,469,923
전기: 10,266,919,803 좌	수익조정금	69,085,394		-42,669,948		-28,463,146
전전기: 10,406,539,869 좌)						
(기준가격 당기: 1,228.56 원						
전기: 1,119.54 원						
전전기: 1,044.68 원)						
자 본 총 계		12,751,013,780		11,494,191,963		10,871,546,64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2,784,981,442		11,531,176,599		10,878,785,142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5기(2025.11.08-2026.11.07) 금 액		제4기(2024.11.08-2025.11.07) 금 액		제3기(2023.11.08-2024.11.07)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0,731,587		10,779,407		12,771,265
1. 이 자 수 익	10,731,587		10,779,407		12,771,265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945,950,422		2,494,284,155		3,282,057,134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474,576,923		917,905,017		1,975,553,448	
5. 외환거래/평가차익	1,929,105,551		1,360,812,493		1,171,456,325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542,267,948		215,566,645		135,047,361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856,141,098		1,724,932,228		1,405,315,022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1,856,141,098		1,724,585,790		1,404,429,654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346,438		885,368	
운 용 비 용		762,359		689,446		648,422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762,359		689,446		648,422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099,778,552		779,441,888		1,888,864,955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05963645		0.075917793		0.18150749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운용펀드 기준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11.08 - 2026.11.07	103	115	17	20	15	19	104	128
2024.11.08 - 2025.11.07	104	109	15	16	16	18	103	115
2023.11.08 - 2024.11.07	107	92	23	22	25	24	104	109

► Class별 기준 (단위 : 억좌, 억원)

Class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A	2025.11.08 -	1	1	0	0	0	0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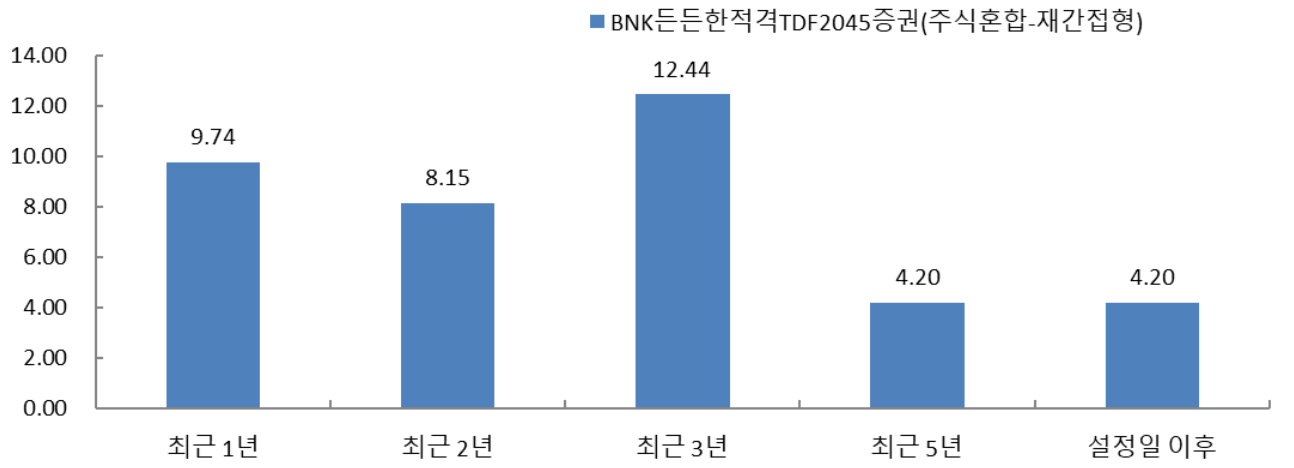
	2026.11.07								
	2024.11.08 - 2025.11.07	2	2	1	1	1	1	1	1
	2023.11.08 - 2024.11.07	3	2	1	1	2	1	2	2
A-e	2025.11.08 - 2026.11.07	6	6	2	2	2	3	6	7
	2024.11.08 - 2025.11.07	8	9	2	3	5	5	6	6
	2023.11.08 - 2024.11.07	9	8	5	5	6	6	8	9
C	2025.11.08 - 2026.11.07	0.2	0.2	0.1	0.1	0.0	0.0	0.2	0.2
	2024.11.08 - 2025.11.07	0.4	0.4	0.2	0.2	0.4	0.4	0.2	0.2
	2023.11.08 - 2024.11.07	0.6	0.5	0.2	0.2	0.4	0.4	0.4	0.4
C-e	2025.11.08 - 2026.11.07	4	4	1	1	2	2	3	4
	2024.11.08 - 2025.11.07	5	5	1	1	2	2	4	4
	2023.11.08 - 2024.11.07	7	6	3	3	5	4	5	5
C-F	2025.11.08 - 2026.11.07	50	55	0	0	0	0	50	60
	2024.11.08 - 2025.11.07	50	52	0	0	0	0	50	55
	2023.11.08 - 2024.11.07	50	43	0	0	0	0	50	52
C-Pe	2025.11.08 - 2026.11.07	0.00	0.00	0.02	0.03	0.00	0.00	0.03	0.03
	2024.11.08 - 2025.11.0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23.11.08 - 2024.11.0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P2	2025.11.08 - 2026.11.07	10	11	1	1	1	2	9	11
	2024.11.08 - 2025.11.07	9	9	1	1	1	1	10	11

	2023.11.08 - 2024.11.07	9	7	2	2	2	2	9	9
C-P2e	2025.11.08 - 2026.11.07	34	37	13	16	10	12	37	44
	2024.11.08 - 2025.11.07	31	32	10	10	7	7	34	37
	2023.11.08 - 2024.11.07	30	25	12	12	11	10	31	32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다를수 있으므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11.09 ~ 26.11.08	24.11.09 ~ 26.11.08	23.11.09 ~ 26.11.08	21.11.09 ~ 26.11.08	21.11.08 ~ 26.11.08
BNK 든든한적격 TDF2045 증권 (주식혼합-재간접형)	9.74	8.15	12.44	4.20	4.20
수익률변동성(%)	9.30	9.87	9.83	11.75	11.75
A	8.71	7.13	11.37	-	3.21
수익률변동성(%)	9.30	9.87	9.83	-	11.75
A-e	9.03	7.45	11.70	3.50	3.50
수익률변동성(%)	9.30	9.87	9.83	11.75	11.75
C	8.39	6.82	11.05	-	2.84
수익률변동성(%)	9.30	9.87	9.83	-	11.77

C-e	8.86	7.28	11.53	3.34	3.33
수익률변동성(%)	9.30	9.87	9.83	11.75	11.75
C-F	9.27	7.69	11.96	3.74	3.74
수익률변동성(%)	9.30	9.87	9.83	11.75	11.75
C-Pe	9.32	7.94	-	-	8.56
수익률변동성(%)	9.30	9.87	-	-	10.02
C-P2	8.70	7.13	11.37	-	3.20
수익률변동성(%)	9.30	9.87	9.83	-	11.75
C-P2e	9.03	7.45	11.70	-	3.51
수익률변동성(%)	9.30	9.87	9.83	-	1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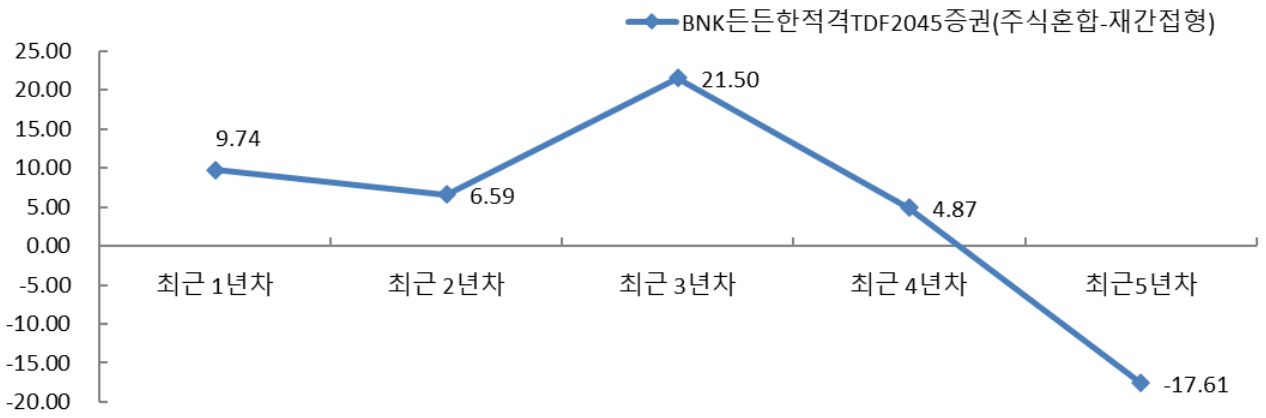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없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4) 수익률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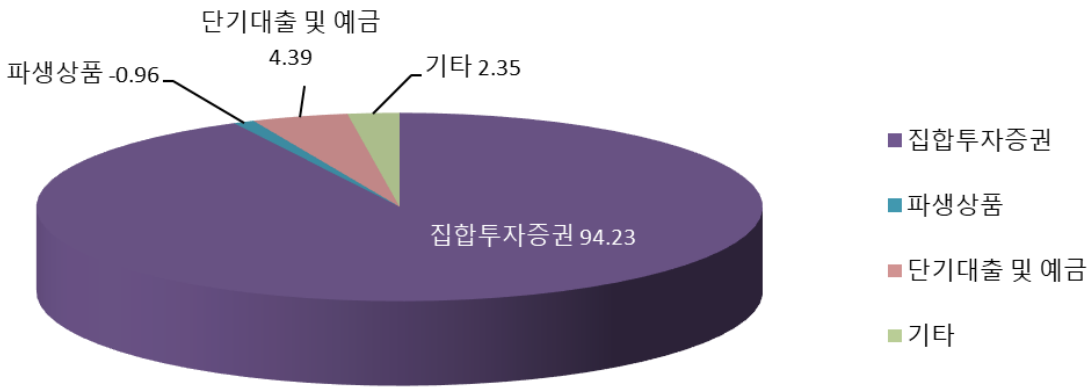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5.11.09 ~ 26.11.08	24.11.09 ~ 25.11.08	23.11.09 ~ 24.11.08	22.11.09 ~ 23.11.08	21.11.09 ~ 22.11.08
BNK 든든한적격 TDF2045 증권 (주식혼합-재간접형)	9.74	6.59	21.50	4.87	-17.61
A	8.71	5.58	20.35	3.87	-18.59
A-e	9.03	5.89	20.71	4.18	-18.22
C	8.39	5.27	20.00	3.57	-19.26
C-e	8.86	5.72	20.52	4.02	-18.36
C-F	9.27	6.13	20.98	4.42	-18.01

C-Pe	9.32	6.58	-	-	-
C-P2	8.70	5.58	20.35	3.87	-18.54
C-P2e	9.03	5.89	20.71	4.18	-18.30

주1) 비교지수 없음
주2)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6)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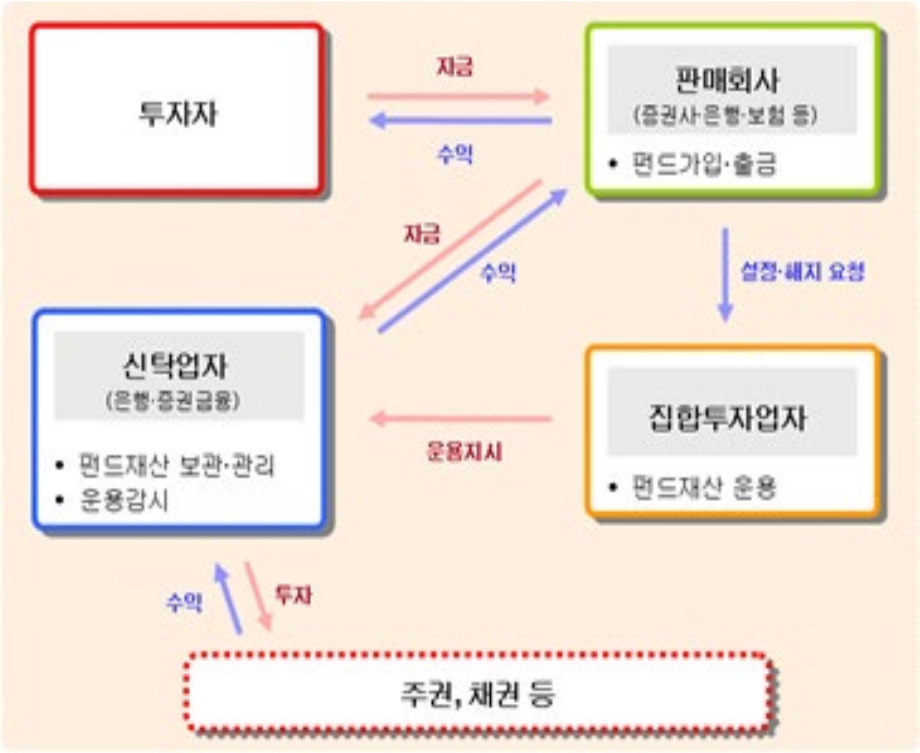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6.11.07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1	3	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2.12)	(67.88)	(3.00)
USD	0	0	0	120	0	-1	0	0	0	4	0	123
	(0.00)	(0.00)	(0.00)	(97.60)	(0.00)	-(1.00)	(0.00)	(0.00)	(0.00)	(3.39)	(0.00)	(97.00)
합계	0	0	0	120	0	-1	0	0	0	6	3	128
	(0.00)	(0.00)	(0.00)	(94.23)	(0.00)	-(0.96)	(0.00)	(0.00)	(0.00)	(4.39)	(2.35)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2026.11.08 기준)

회사명	BNK 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21층 (연락처 : 02-6910-1100, www.bnkasset.co.kr)
회사 연혁	2008.07 GS 자산운용(주) 설립 2015.07 자본금 증자(+40.5 억) 및 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사명 변경 2017.12 BNK 금융지주 100% 자회사 편입 및 자본금 증자(+30 억) 2018.11 자본금 증자(+30 억) 2020.08 자본금 증자(+30 억) 2021.05 자본금 증자(+156.25 억)
자본금	416.75 억
주요 주주현황	BNK 금융지주(100%)
이해관계인	한국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을 보관 · 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24.12.31	'25.12.31	항 목	'24.01.01~ '24.12.31	'25.01.01~ '25.12.31
현금및예치금	4,046	5,398	영업수익	26,589	33,313
유가증권	169,120	187,543			
대출채권	25	31			
유형자산	1,527	4,858	영업비용	17,348	19,862
기타자산	4,968	6,078			
자산총계	**179,686**	**203,908**	영업이익	9,241	13,451
예수부채	220	192			
기타부채	5,905	14,172	영업외수익	2,303	7,675
부채총계	**6,125**	**14,364**			
자본금	41,675	41,675	영업외비용	196	54
자본잉여금	109,079	109,079			
이익잉여금	22,807	38,790			
자본조정	0	0	경상이익	11,348	21,072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0	0	법인세 등	2,738	5,089
			당기순이익	8,610	15,983
자본총계	**173,561**	**189,544**			

라. 운용자산 규모(2026.11.08 기준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	파생형					
수탁고	6,256	18,949	1,639	0	709	1,050	4,107	0	2,011	65,173	99,89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1) 업무위탁의 범위와 사유

- **업무위탁의 범위**: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운용지시 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 **업무위탁의 사유**: 업무의 전문성 강화

(2) 업무위탁 집합투자업자 개요

위 탁 운 용 사	Dimensional Fund Advisors Pte. Ltd.
업 무 위 탁 범 위	운용업무 / 운용지시업무 /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설 립 연 도	2012 년 05 월 02 일
회사주소 및 연락처	8 Marina View, Asia Square Tower 1, Suite 33-01, Singapore 018960. 전화번호 : +65-6340-1300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씨티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 02)3455-2114
회 사 연 혁 등 (홈 페 이 지 참 조)	www.citibank.co.kr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02-2168-0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의무]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이지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 02-785-141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 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kr	www.bond.co.kr	www.fnpricing.com	www.egap.co.kr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단, 집합투자규약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상법」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봅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②의결권 행사방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위의 ②의결권 행사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 각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

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 제125조 각호의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집합투자규약 제42조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그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1)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주체	BNK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목적	펀드 성과 공유를 통한 책임운용 강화로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투자시기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50억원 (의무투자금액 2억원 포함)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할 계획 (* 의무투자금액 2억원의 경우 주1), 주2) 참조)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금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익구조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 투자신탁의 적정 설정규모 달성 등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될 예정입니다. (단, 회수시점에 투자금액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주1) 의무투자금액(2억원)의 경우 의무투자기간(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당연 해지사유 발생
-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

주1) 의무투자금액(2억원)의 경우 의무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2)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은 작성기준일 시점 내용이므로 관련 법규, 당사 내부 규정 또는 당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가. 신탁업자
   나.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예비투자설명서
5. 간이투자설명서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 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 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